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사례

2000. 9. 2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미래와사람 및 권성문의 기업결합신고규정위반행위에 대한 건 (2000기결0859)	주식회사 미래와사람과 동 회사의 1대주주이며 동일인인 권성문은 1999. 3. 2. (주)옥선의 주식을 취득한 후, 법정 신고기한인 30일을 경과하여 2000. 7. 3.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2조제4항 위반	◎ 과태료 납부(단위 : 천원) (주)미래와 사람 : 3,000 권성문 : 3,000

2000. 9. 4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건 (2000독관0321)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자신의 자회사인 한국통신진흥(주)가 1999. 11. 6. 자신의 평택전화국 관내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초고속통신망 HDSL 구축사업을 하기 위해 2000. 11. 15.까지 양우통신(주)와 「초고속구내인터넷서비스 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가입자 모집을 위탁하여 양우통신(주)가 가입자를 모집하자, 한국통신진흥(주)가 자신과 체결한 「ADSL-B&A 인터넷서비스 공동사업협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초고속통신망 HDSL 구축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2000. 1. 10.부터 1. 14.까지 한국통신진흥(주)의 초고속통신망 HDSL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자신의 초고속통신망 ADSL-B&A에는 유리한 반면 한국통신진흥(주)의 초고속통신망 HDSL에는 불리한 내용만을 게재한 평택전화국장 명의의 공문 및 초고속통신망 ADSL-B&A와 HDSL 비교표를 양우통신(주)의 가입자 모집대상인 56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전달·설명하고 자신과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양우통신(주)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 위반	◎ 사업활동방해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12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2000. 9. 23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옥시의 기업결합신고규정위반행위에 대한 건	주식회사 옥시는 2000. 2. 29. 및 4. 12.에 (주)프로케이 머코리아오픈 및 (주)한차닷컴 발행주식 총수의 25.0%	◎ 과태료 납부 : 6,000천원

사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처
(2000독점0960)	<p>및 27.06%를 각각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인 30일을 경과하여 2000. 6. 26. 기업결합신고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위반</p>	
<p>창생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0광고0796)</p>	<p>창생사는 2개 일간지와 4개 잡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신이 생산·판매하는 고속 해면체 정력운동기구를 광고함에 있어 그 효과에 대한 근거자료나 임상실험 결과 등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이 ‘당뇨병,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나 90세 노인도 즉석 발기되어 만족할 때까지 지속할 수 있고, 조루증상에 대한 효과가 길어지고 끊어지는 단련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15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주)고려알앤디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0광고0949)</p>	<p>주식회사 고려알앤디는 2000. 3. 28. 중앙일보를 통하여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하면서 자신이 제조하는 한과 제품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한 상태일 뿐 특허를 받은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최초 특허”, “국내에서 최초로 각종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라고 표현하였고, 가맹점사업자의 이윤은 제반 여건에 따라 다르며 자신의 가맹점이 달성한 이윤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도 없이 “그로 인해 84% 이상의 이윤으로 매출이익을 현실화 시켰고...”라고 표현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주)하모라의 중간관리자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2000약제0948)</p>	<p>주식회사 하모라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중간관리자 계약서 제7조제3항에 중간관리자에게 판매대금으로 지급된 결제수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중간관리자 고객에게 이전시켰으며, 제17조제1항에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규정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약관법 제17조 위반</p>	<p>◎ 중간관리자 계약서상 해당 규정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토록 함</p>
<p>백송 F·S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0광고0798)</p>	<p>백송 F·S는 2000. 1. 1.부터 6. 12.까지 한국일보 등 7개 일간지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광고하면서 주식회사 진로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주식회사 진로의 법인체에 속하는 사업부나 계열회사의 지위를 갖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진로 두꺼비하우스 사업본부”라고 표기하였으며,</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p>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없이 "제세공과금 등 제비용을 공제한 후 500만원의 순이익은 확정적이다"라고 표현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공표토록 함

2000. 9. 25 심결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복정제형(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0광고0797)	복정제형 주식회사는 5개 여성월간잡지를 통하여 자신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판매하는 가정용 저울 '복정 타니타'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나 공신력 있는 조사 없이 "품질, 시정점유율, 고객만족도 세계 1위, 국내 1위"라고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12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2000. 9. 29 심결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주)태평양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9911경축1585)	주식회사 태평양은 1999. 5월부터 전속대리점인 제주중앙특약점을 통하여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여 온 여래화장품의 대표가 신병으로 인하여 1999. 7월부터 8월까지 (주)엘지화학의 순회사원에게 매장의 판매관리를 위임함에 따라 소매점의 자신의 제품에 대한 구매량과 구매비율이 크게 낮아지자, 소매점 사업자는 판매목표의 설정과 달성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에도, 1999. 7월 소매점에게 인기제품인 "아이오페"의 공급조건으로 동 제품과 기타 브랜드 제품을 합계한 매출액이 월 300만원이 되도록 요구하였고, 소매점이 이를 거부하자 1999. 8월 초순경 동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등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판매목표를 강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 위반	◎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인천·경기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단체표준인증업무 규정 제12조제1항에 단체표준표시 인증신청 대상을 회원조합 조합원으로 한정하였으며, 인천·경기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동 규정을 근거로 비조합원의 단체표준인	◎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규정의 조항을 수정토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처
(2000단체0755)	증 신청을 받지 않는 등 비구성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하여 관련 지역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생산 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	록 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각각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사)대한치과기재협회 및 서울특별시치과기재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건 (2000단체0822)	서울특별시치과과의사회 주관으로 2000. 6. 10.부터 6. 11.까지 개최된 치과기자재전시회 참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치과기재회는 동 의사회와 1999. 10월부터 동 전시회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합의를 못하자, 전시회 등에의 참가는 각 구성사업자의 개별적인 사업활동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2000. 5. 24. 임시이사회를 개최, 동 전시회에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것과 전시회에 참여하는 비회원사에게 회원사 제품을 위탁 전시·판매하는 것을 자제토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문서로 통보하였으며, (사)대한치과기재협회는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2000. 5. 10. 임시이사회에서 회원사의 동 전시회 참가를 금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할 수 있음을 규정한 전시회 관리규정을 회원사에 문서로 통보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 위반	◎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규정의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각각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2000단체0824)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2000. 5. 12. 캐피탈 호텔에서 「수도권지역 레미콘생산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레미콘 민수가격의 정상화를 위하여 2000. 5. 16.부터 5. 18.까지 건설업체에 레미콘 공급을 중단할 것을 결의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이를 실행토록 하여 서울·경인지역 레미콘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	◎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 및 경기도 내 1개 지방일간지 전판에 각 5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상록플라자(주)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2000광사0351)	상록플라자주식회사는 1999. 5월 영업개시 이후 예식장 대여료만으로는 경영수지를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식장 이용고객에게 자신의 예식장으로부터 드레스, 사진 및 비디오도 함께 이용하도록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강요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 거래강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광주 지역의 1개 지방일간지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대한안경사협회충남지부 천안분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안경사협회충남지부천안분회는 구성사업자들은 광고내용, 휴일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구성사업자인 씨채널안경이 자신의 상품에 대한 광고를 할 때 가	◎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

사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p>대한 건 (2000전사0708)</p>	<p>격을 표시하고, 정관 제2장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월 2회의 휴일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0. 3. 31. 씨체널안경에게 회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문서로 통보하였으며, 자신의 정관 제2장 제3조제3항에 휴일제를 위반하는 회원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 위반</p>	<p>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정관규정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대전·충남지역의 1개 지방일간지 전면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천안지역 5개 극장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0전사0785)</p>	<p>아카데미극장 대표와 한일극장 대표는 영화상영업 사업자들은 각자 자율적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 1. 17. 상영프로 협의를 위하여 각각 대전영화사와 다운타운영화사를 방문하여 천안지역의 영화관람료를 500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2000. 1. 10. 부터 1. 12.까지 이들 극장 대표는 (주)아라리오산업과 피카디리극장, 시네마타운극장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영화관람료 인상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며, 합의한 내용대로 영화관람료를 인상하여 천안지역 영화상영업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위반</p>	<p>◎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충남지역의 1개 지방일간지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주)동양백화점(갤러리아 타임월드)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2000전사0745)</p>	<p>주식회사 동양백화점은 2000. 3. 13.부터 6. 30.까지의 기간동안 3차례에 걸쳐 자사 백화점카드 및 제휴카드인 삼성카드로 가전제품 30만원 이상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6개월 무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하면서 이에 따라 카드수수료 부담이 발생됨을 이유로 (주)코미상사 등 22개 납품업체의 백화점수수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납품업체와 협의도 없이 백화점수수료를 1%씩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카드수수료 부담액 9,553천원을 22개 납품업체에게 전가하였으며, 2000. 5. 1.부터 5. 7.까지 판매가 부진한 냉장고, 피아노, 컴퓨터 품목에 대해 자사 백화점카드 및 삼성카드로 50만원 이상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10개월 카드무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하면서 2000. 4. 26. (주)광도 등 4개 납품업체의 백화점수수료를 공히 3%씩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2000. 4. 28. (주)광도 등 4개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액 2,125천원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카드수수료 부담액 총 11,678천원을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p>	<p>◎ 특정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점포차인 및 납품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2000. 9. 30 심결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p>인천제철(주)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00기결0846)</p>	<p>인천제철(주)는 2000. 5. 4. 삼미특수강(주)의 주식 58.5%를 취득하기로 계약체결하고 2000. 6. 3. 이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동 기업결합으로 신규진입의 가능성과 해외경쟁의 도입 정도가 낮은 상황에서 시장집중도에 있어 경쟁제한성이 추정되고 공동행위의 우려도 높아 효율성증대효과보다 경쟁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므로 공정거래법 제7조제1항 위반</p>	<p>◎ 시정명령일로부터 2003. 12. 31.까지 자신 및 자신이 인수하는 삼미특수강이 생산·판매하는 스텐레스 냉연강판 중 해당 제품을 별도의 산식에 의한 가격 이하로 유지토록 하고, 추가금액의 변경이나 다른 제품을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결정에 관하여 공정위와 사전 협의토록 함</p>
<p>영창약기제조(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0광고0756)</p>	<p>영창약기제조주식회사는 2000. 4. 12부터 자신이 제작하여 전국 각 대리점에 배포한 안내판(POP)을, 2000. 5. 31.부터는 카탈로그와 광고전단을 통하여 “메이커별 사양비교표”라는 제하에 피아노 제작에 필요한 부품 및 그 조립방식 등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자신의 제품과 외국 제조업체인 스타인웨이, 야마하, 가와이 외에 국내 유일한 경쟁사업자인 삼익악기를 “타사”라고 지칭, 자신의 제품의 향판과 브릿지는 통채로 만들어졌으나 “타사”의 제품은 모두 합판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표현하였고, 자신의 제품의 액손은 모두 정목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표현하였으며, “타사”의 그랜드형 제품은 자신의 제품과 달리 모든 지주가 접착식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표현하여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비교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3호 위반</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